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477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규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포상에 있어 ‘1년간’ 단기간 의미를 삭제하고, 문화재 홍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하도록 수정하는 것임.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서울시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
나. 포상 절차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을 준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9조 중 “1년마다 문화재”를 “문화재”로, “대하여”를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1년마다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문화재 ----------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